#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조치일 :** 2024. 12. 9.

**3. 조치내용**

| 조치대상 | 조치내용 |
|---|---|
| 기 관 | 개선사항 2건 |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STR 미보고 건에 대한 분석 및 검토체계 개선**

의심거래에 대해 미보고로 조치하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및 미보고 사유 등 점검의견을 기재하고 있으나 일부 점검의견*의 경우 미보고 판단의 근거가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금세탁행위 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 사례 1) 자금의 원천 및 거래목적을 해당 거래행위에 대한 언급 없이 '사업상 거래'로만 기재
사례 2) 미보고 사유를 '영업거래에 따른 금융거래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 없음'으로 기재

식별된 의심거래를 미보고로 판단하는 경우 미보고 사유에 식별 원인, 해당 거래의 배경 및 목적, 고객 특성 및 과거 금융거래 이력 등 구체적 검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당 의심거래에 대한 미보고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 (2) 이상외환거래에 대한 확인 및 거래중단 절차 마련

외화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추가 확인하여 필요시 거래를 중단하는 절차가 없어, 특정 업체의 이상외화송금과 관련하여 STR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 업체에 의한 이상외화송금이 지속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상징후 발생시 거래내역 점검, 추가서류 요청,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절차를 내규 또는 실무기준에 반영하시기 바람